

코로나19 관련 납세담보 면제기준 완화

□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(현행 1억원 → 1.5억원)

○ (개요) 코로나19 특례기준으로 소상공인·중소기업¹⁾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한시적 1.5억원(현행 1억원)²⁾으로 상향

-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며, 코로나19 특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³⁾, 세목⁴⁾은 제외

1)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

2) 한시적으로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(7천만원→1억원) 적용('20.2.24.)

3) 고소득 전문직,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

4) 양도소득세, 상속·증여세, 종합부동산세 등

□ 시행 시기

○ '22. 3. 2. 이후 납세자 신청분부터 적용

- 원칙적으로 '22.12월 말까지 적용하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및 피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후 기간 단축 또는 연장

※ 상기 코로나19 특례기준 외 일반 납세담보 면제기준은 불임 참고

붙임

납세담보 면제기준

□ (일반기준)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음

금 액	유 형
7천만원	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1억원	① 생산적 중소기업 ② 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③ 사회적기업 ④ 장애인 표준사업장 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⑥ 재기 중소기업인 ⑦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⑧ 스타트업 기업 ⑨ 혁신중소기업
2억원	⑩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⑪ 종합인증우수업체(관세청)
5억원	⑫ 모범납세자 ⑬ 세금포인트
한도 없음	⑭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를 연장하는 경우 등

- ① (생산적 중소기업)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·광업·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②·⑩ (장기 계속사업자) 동일 사업자번호로 5년(20년)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
- ③ (사회적기업)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
- ④ (장애인 표준사업장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
- ⑤ (일자리 창출 중소기업) 납세유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상시 근로자수(연평균)가 직전 연도 대비 2%(최소 1명)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
- ⑥ (재기 중소기업인) 관련 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
- ⑦ (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)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의 확인 또는 인증을 받은 우수 협력기업
- ⑧ (스타트업 기업)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사업개시 5년 미만 중소기업
- ⑨ (혁신중소기업)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'기술혁신형 중소기업' 또는 '경영혁신형 중소기업' 으로 지정된 중소기업
- ⑪ (종합인증우수업체) 관세청장이 선정한 업체(AEO)(구.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)
 - *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신청 해당 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
- ⑫ (모범납세자) 국세청장 표창규정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등
 - * 국세청장 이상 표창 : 3년간, 지방청장 이하 표창 : 2년간
- ⑬ (세금포인트) 사용가능 포인트(개인 1점 이상, 법인 100점 이상)×100,000원
 - * 한도 5억원(5천점),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사용 불가